

# 4가지 관점의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 유럽과 한국을 비교하여\*

## Strategies to Activate MyData Convergence Services from Four Perspectives: Compared to Europe and Korea

박주석<sup>1</sup> · 김혜영<sup>2\*</sup> · 김한성<sup>3</sup> · 최민령<sup>4</sup>

경희대학교 경영학과<sup>1</sup>,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sup>2</sup>,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sup>3</sup>, 법무법인(유한)에스엔<sup>4</sup>

### 요 약

개인데이터의 활용을 넘어서 마이데이터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은 가운데,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의 이념이 구현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의 사상에 충실한 유용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마이데이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균형 잡힌 네 가지 관점(BLTS: Business, Legal, Technology, Social)에서 제시하였다.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선구적이라는 유럽의 정책과 서비스 등을 국내 상황과 비교하여 국내의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및 정책에서 균형적이면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개인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마이데이터, BLTS,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 Abstract

Interest in the transition to MyData beyond the use of personal data is high worldwide. In order for the ideology of MyData to be realized, various useful MyData services would be developed in practice. Above all, convergence must be premised for the development of MyData. This study proposed strategies for activating MyData convergence services from four perspectives (BLTS: Business, Legal, Technology, and Social). In particular, the purpose was to revitalize domestic convergence services by comparing European policies and services, which are the most pioneering in the field of MyData, with the domestic situ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balanced and progressive ideas in the MyData industry and policies.

■ Keyword : Personal Data, Privacy, MyData, BLTS, MyData Convergence Service

2021년 11월 29일 접수; 2021년 12월 16일 수정본 접수; 2021년 12월 21일 게재 확정.

\* 본 논문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20년 데이터산업포럼 '마이데이터 분과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또한 본 논문의 일부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8103855).

† 교신저자 (hyeyoung@sm.ac.kr)

## I. 서론

데이터는 우리의 일상을 면밀히 기록하고 수 없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고 여겨진다. 데이터의 범위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으로 확장되었고 삶의 전반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이의 활용을 더욱 고민하게 된 것이다. 개인데이터 보호에 대한 관심과 데이터를 활용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마이데이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장 및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그 발전 속도와 다양성에 있어서는 부진한 면이 있다. 마이데이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개인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서비스를 넘어선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균형 잡힌 네 가지 관점, 즉 BLTS(Business, Legal, Technology, Social)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1-1.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전략은 무엇인가?
- 1-2. 법, 정책과 제도측면에서의 전략은 무엇인가?
- 1-3. 기술측면에서의 전략은 무엇인가?
- 1-4. 사회, 생태계 구성 측면에서의 전략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Ⅱ장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념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와 개인데이터에 관한 기존 자료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유럽의 마이데이터 추진현황을 살펴본다. 제Ⅳ장은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제Ⅴ장에서는 국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융합서비스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전략을 정리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 II. 문헌 연구

### 2.1 마이데이터의 정의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히 합의된 의미로 통용되지 못한다. 이는 마이데이터가 갖는 다층적인 개념, 즉 데이터(data)로서, 권리(right)로서 나아가 운동(movement)으로서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나의 데이터, 즉 개인데이터(personal data)이다. 데이터(data)로서 마이데이터는 자연적, 법적, 사회 활동적 등 관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의 신체, 나이, 성별, 이름 등과 같은 데이터들이 자연적 영역에 속한다. 한편 법적으로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핵심요소로 하므로 이러한 권리가 법제화되어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측면에서만 주로 적용되는 개인 데이터이다. 이밖에 개인의 사회활동으로 드러나는 직업, 종교, 정치성향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에게 ‘나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최대한 이익을 얻어 내는 방식으로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

자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개인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된 결정권, 통제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가 담긴 데이터 집합체(자신의 구매 데이터, 통신 데이터, 의료 기록, 금융 정보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추출한 데이터 등)에 접근, 획득, 그리고 이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수단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조직(기업 또는 기관)은 개인에게 자기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최소한 법적 요구사항 이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 관리 및 처리에 있어 현재의 조직 중심적 체계에서 인간 중심적 체계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실천적 운동(movement)의 의미도 갖고 있다.

## 2.2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개인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보호가 양립하던 때와는 다르게 현재 마이데이터 시대에서는 개인데이터가 충분히 보호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마이데이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활용과 관련하여 각 주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2.2.1 개인데이터의 보호

개인의 사회적 평판은 중요하며, 평판은 개인의 존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잘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평판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개인데이터는 평판을 어렵히는 측정(통계)치

로써 개인의 신용과 디지털 ID(신원등록을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처럼 사회경제적으로 격리 및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ID의 발급 및 통용이 용이한 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기대응이 용이한 점은 주목할 만했다. 개인데이터는 삶의 주체로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도움을 주는 한편 그 자체로 우리 행동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의 독점이나 소유에 대한 다툼은 바람직하지 않다.

### 2.2.2 개인데이터의 활용

개인데이터가 온전히 개인의 것은 아니다. 데이터로서의 일반적 가치<sup>1)</sup>를 상당부분 갖고 있어 오히려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하는 경제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의 공공재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

많은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는 지에 대해 무관심하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기반 하에서 개인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consent)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어떤 면에서 개인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결정과 통제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동의는 규제로서 개인데이터의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동의를 받지 않고는 개인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다. 따라서 개인데이터는 개인에게 속한 데이터가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을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3 국내 마이데이터 연구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법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1)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무한히 복제 가능한 비경쟁성을 갖으며(non-rivalrous) 동시에 암호화를 통하여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배제적(excludable) 속성에 따라 공공 건설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성격의 공공재적 특성과 함께 민간유치 건설 도로와 같은 사유재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1]. 미국 및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현황 등을 토대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 [3] 또는 해외 정책적 이슈나 사례 등을 다루는 연구들도 있다 [9], [10]. 최근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례나 전략에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의료나 금융, 교통 등 개별분야에 한정되어 소개하고 있다 [1], [8]. 종합적인 관점에서 마이데이터의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 연구는 드물었다.

### III. 유럽의 마이데이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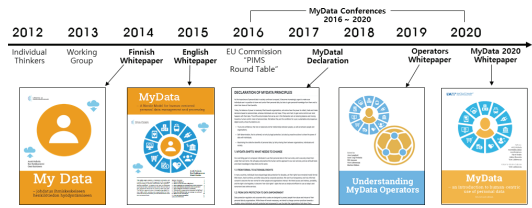
#### 3.1 마이데이터 개념의 진화

마이데이터 개념은 오픈데이터 개념이 발전되면서 시작되었다. 팀 버너스 리 등 오픈데이터 연구자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추진하면서 개인 데이터의 개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에서 마이데이터 법안(Midata Initiative)이 2011년에 통과되었고 유럽의 각 국가가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정책의 결과로 2018년에 GDPR 법안이 통과되어 개인의 데이터 열람권, 이동권, 삭제권 등이 법제화 되었다.

이와 별도로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11년부터 개인데이터 생태계 관련 보고서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전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특히 2013년 보고서에서는 ‘개인데이터를 21세기의 모든 분야를 연계할 새로운 경제적 자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핀란드에서는 그동안의 마이데이터 개념을 정리하여 조직데이터에 대비되는 마이데이터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2014년에 마이데이터 백서를 발간하였고 2017년에 마이데이터선언문을

발표하였다 [5]. 2018년에 비영리조직인 마이데이터글로벌이 창립되어 마이데이터 사상을 전세계에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에 오퍼레이터 백서가 발간되었고 2020년에 마이데이터 백서가 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20년 마이데이터 백서를 주로 참고하여 한국과 유럽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6].



〈그림 1〉 마이데이터 사상의 발전, MyData Global [6]

#### 3.2 유럽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현황

마이데이터 백서에서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에서 대표적인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6가지 유형은 정보 주체, 데이터공급자, 서비스제공자,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6].

첫 번째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은 휴대용 미디어 프로필이다. 지금까지는 회사별로 관리되는 프로필을 통해서 각각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마이데이터로 개인의 융합된 프로필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추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휴대용 프로필은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으므로 단일 회사에서 생성한 프로필보다 훨씬 다양하고 정확하다. 마이데이터를 사용하면 각 서비스별로 고객의 프로필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쓰는 대신, 여러 서비스에 동일하고 풍부한 프로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은 검증된 데

이터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 공급자와 직접적인 계약이라 접촉이 불필요할 때 유연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유연한 데이터 전송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출처와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인증은 마이데이터 전자서명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채용 및 인적자원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모델에 맞추어 개인들이 제공한 검증된 역량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은 사용자 데이터의 분산 활용이다. 마이데이터에는 서비스 체인을 분산하거나 탈 중앙화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서비스 체인 내에서 각 행위자가 서로 다른 역할에 특화되어 있다. 만약 사람들이 우수 고객 프로그램 시스템의 구매 데이터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전송할 수 있다면 더 기민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네 번째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은 사회적 데이터 수집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려면 많은 사람 그리고 여러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를 위한 공개 데이터 세트의 사용을 관리하는 법률이 매우 다양하고 엄격하다. 향후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방법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데이터 사용을 허락하거나 그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은 상호 작용의 일부로서의 데이터이다. 전통적으로 데이터는 조직의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 있다. 조직이 서비스를 자동화할 때에 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조직과 개인의 데이터 비대칭성 때문에 개인은 자신에게 미치는 조직의 결정과 그 결정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은 은행 대출신청 거부 이유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확히 알 수 없다. 마

이데이터 접근방식 하에서, 데이터는 개인과 조직 간의 상호작용의 일부이며 개인은 조직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데이터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은 사물에 대한 데이터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장치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로 자율적으로 통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단지 제조업체의 플랫폼에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은 차량의 위치와 작동은 물론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한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업체만이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마이데이터 접근방식 하에서, 사물인터넷 기기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공유되는지를 그 소유자가 명확하게 알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IV. BLTS 관점의 마이데이터 발전전략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커질 예정인데, 개인에 관련된 데이터가 분야별로 단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욕구에 충분히 응답하기가 어렵다.

최근에 마이데이터 상황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 의욕이 서둘러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개인데이터는 금융, 의료, 통신 등 도메인들이 상호 간 소통하지 못하는 사일로(silo)처럼 나누어져 아직 통합되지 못한 채로 그 활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수식되는 여러 서비스 사업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개인을 위한 융합서비스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4가지 관점, 즉, 비즈니스 관점, 정책 및 제도 관점, 기술 관점, 생태계 및 사회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소위 BLTS(Business, Legal, Technology, Social) 관점으로 부르기도 한다.

#### 4.1 비즈니스 관점 (Business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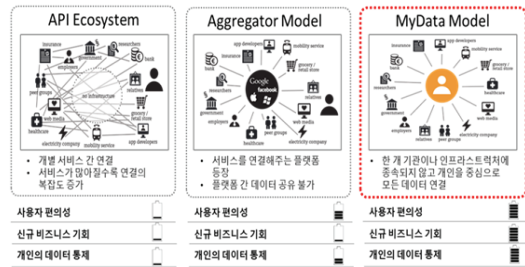
##### 4.1.1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등장

지난 30년 동안 조직 중심의 데이터생태계가 데이터경제를 주도해왔다. 그동안 개인 중심의 데이터생태계를 구현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디지털 세상의 도처에 흩어져 있는 나의 데이터를 접근, 획득, 그리고 활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수단이 개인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데이터 관리 체계나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나의 데이터를 획득 및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7].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인을 대신해서 개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데이터를 접근, 수집 및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업자를 글로벌 조직인 ‘마이데이터글로벌’에서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Operator)’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가 2020년 2월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등장은 본격적인 개인데이터 생태계 구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1.2 개인데이터 생태계의 주도권

글로벌 조직인 ‘마이데이터글로벌’에서는 개인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는 3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은 API 중심 모델이다. 개인이 요청하는 데이터를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서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개별 서비스 간 연결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연결의 복잡도가 증가하며 개인의 전반적인 데이터생태계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두 번째 모델은 집합자(Aggregator) 중심 모델이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이 중심이 되어 개인의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개인이 플랫폼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플랫폼 간 데이터 공유는 불가능하다. 세 번째 모델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MyData Operator) 중심 모델이다. 특정 기관이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모델이다.



〈그림 2〉 개인데이터생태계의 3가지 모델, MyData Global [5]

##### 4.1.3 빅테크기업과 스타트업계의 균형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이 수행해야 된다는 주장과 창의적인 서비스를 발굴하는 기업이 수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 주장이 각각 맞는 측면이 있

다. 첫 번째 주장은 빅테크 기업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주장은 스타트업체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이미 전 세계적인 데이터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이 강하나, 유럽은 이러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입장이 강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춘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존재한다. 최근에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전통기업 또는 스타트업체와 영역별로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럽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즉,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항하여 국내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체 간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은 자신의 핵심자원을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데이터를 서비스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자발적 협력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 4.2 정책 및 제도 관점 (Legal Perspective)

세계의 데이터경제는 생태계 단위의 경쟁이기 때문에 정부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목표를 ‘개인 삶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융합’으로 잡고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나 융합비즈니스모델을 창출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별 경쟁구도가 아니라 산업을 넘어선 데이터생태계 내에서의 선순환을 위한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법, 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마이데이터 현황 및 수요조사에서 마이데이터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 잘 알거나,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국내 기업과 기관은 28.6%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 또는 기관은 8%로 낮은 수준이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 4.2.1 포괄적 마이데이터 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정책은 늦게 시작했지만 최근에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부처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이동권 정책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은 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별 마이데이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데이터이동권)을 신설하였다(제33조의2). 즉, 금융 산업에서만 데이터이동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타 산업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전체 산업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21년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개인신용정보 등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유럽의 GDPR 법안은 특정 산업에 한정된 법이 아니다. 개인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개인데이터 열람권, 이동권, 삭제권 등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개인데이터주권을 확립해 주어야 창의적인 개인 데이터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다.

#### 4.2.2 마이데이터사업 허가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였다 [2]. 즉,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신용정보 이동을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허가제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개인의 동의만 받으면 금융데이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개인데이터를 받아서 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신용정보는 개인의 금융에 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허가제로 시행하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다. 문제는 타 부처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을 참조하면서 허가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많은 산업이 마이데이터 허가제로 간다면, 창의적인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4.2.3 개인 동의방식 개선

데이터 보유기관 관리 및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융합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의 사고 시의 책임범위나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개인, 기업, 기관 등의 가치공유 체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거래활성화를 위한 촉진사업 및 거래 간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대하여 면밀히 준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적의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의 권리나 보호체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초점을 수집에서

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 또는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으로 프로파일링<sup>2)</sup>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활용이 점점 높아지면서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가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opt-in)를 받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규제를 중요한 개인정보 유형을 제외한 대다수가 동의할 만한 사안은 기본설정(default)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디폴트 규칙<sup>3)</sup>(default rule)과 같은 사후 거부(opt-out) 방식이 고려할 만하다.

실제 최근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조사한 마이데이터 현황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개인정보 확보 및 공급의 어려움’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 즉, 데이터의 소재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데이터 공급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인식이 부재’하고(41.8%), ‘제3자 제공 등 개인의 동의 여부 확인이 어렵고 복잡’하다는(30.9%) 순서로 마이데이터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데이터 이동 및 활용을 위한 동의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4.2.4 법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에 ‘주문내역’정보가 포함(신용정보법 제9호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2항 별표1)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전자상거래기업과 금융사(핀테크 업체 포함)간

2) GDPR Article 4(4)에 따르면 프로파일링은 자연인에 대한 개인적 측면 - 특히 자연인의 업무성과,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 선호, 관심, 신뢰성, 행동, 위치 또는 이동과 관련된 측면을 분석 또는 예측 - 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로 정의하고 있다.  
3) 리차드 탈러와 셉스턴 교수가 저서 ‘넛지’에서 소개하는 개념으로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고 대다수가 동의할 만한 사안은 기본설정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 사후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제공되는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마이데이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지만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제공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왔던 온라인 업체의 시간과 노력에 무상으로 편승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므로 개인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컨대,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신설 등)가 필요하다.

개정된 신용정보법 하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비금융권 사업자에게도 겸업을 허용하였지만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업은 금융이라는 분야에서 개인의 신용정보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분야, 보건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 4.3 기술 관점 (Technology Perspective)

#### 4.3.1 개인데이터저장소 프레임워크 확립

개인 중심의 데이터생태계에서는 개인이 안전하고 구조화된 방법으로 개인 데이터를 저장,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개인데이터저장소(PDS: Personal Data Store)가 중요하다. 기업 또는 기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데이터가 개방됨에 따라 개인데이터저장소가 주목받고 있다. 개인데이터저장소는 개인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회사나 기관 등 조직에서 개인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데이터저장소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중앙 집중적인 데이터저장소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데이터저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위한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데이터저장소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에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인데이터저장소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2020년 마이데이터 현황 및 수요조사에서 개인데이터 저장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거나 활용방안을 고려 후 이용하겠다는 기업 또는 기관이 47.3%로 높게 나타났다 [12].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타 기업이나 기관에 산재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편리해지겠다는 기대와 함께,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부담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사의 서비스가 쉽게 모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개인데이터저장소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거래에 대한 편의와 이익, 공정성 등을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 4.3.2 데이터 유통의 글로벌 기술 표준 적용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스크래핑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교환하였다. 조직 중심의 데이터생태계에서는 특정 조직이 중심이 되어 데이터를 유통하였기 때문에 기술 표준이 중요하지 않았다. 개인 중심의 데이터생태계에서는 많은 기업/기관과 데이터를 유통하기 때문에 기술 표준은 중요하다.

이미 마이데이터글로벌을 비롯해서 여러 글로벌 조직에서 기관 간, 서비스 간, 플랫폼 간 데이터 유통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기술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 데이터 유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 4.3.3 마이데이터 기술과 분산아이디 기술의 접목

마이데이터의 중요한 방향은 개인 데이터의 주도권을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에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즉, 플랫폼 기업 등이 갖고 있던 다양한 나의 데이터를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산아이디(DID)의 중요한 방향은 신원 확인의 주도권을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에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빅테크 기업의 소셜로그인을 활용하여 신원을 제공하였다면 향후에는 분산아이디를 활용하여 맞춤형 신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이데이터와 분산아이디의 방향은 일치하며,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호보완적이다.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초기에는 금융, 공공 등 일부 영역에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나타나겠지만, 궁극적으로 다수의 영역에서 다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즉, 개인의 융합 데이터생태계는 다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개인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산아이디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4.4 생태계 및 사회 관점 (Society Perspective)

마이데이터 백서(2020)에 따르면 [6],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크게 5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들로 구성한다. 우선 데이터 주체(subject of data)인 개인,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오퍼레이터(operator), 개인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데이터 공급자(data source), 데이터서비스 제공자(data using service), 생태계 거버넌스(ecosystem governance) 관리자로 구성된다.



〈그림 3〉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의 역할들, MyData Global [5]

### 4.4.1 정보주체로서의 개인의 자각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중심은 개인이다.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나의 일상에 관련된 데이터를 서비스 사업자에게 건네줄 것이다. 즉 데이터 자기결정 권리를 바탕으로 나의 정보를 자기 통제 하에 두되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때 데이터 주체인 개인은 편리하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손쉽게 동의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 4.4.2 데이터 생태계의 역할 세분화

데이터 오퍼레이터는 개인을 위하여 동의라는 절차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나아가 개인데이터의 흐름을 결정한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계정을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디지털 동의(권한 부여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근거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을 보면 기존 사업자 위주로 주로 대형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이 주를 이루며 기술력이 강한 중소 핀테크 업체 또는 스타트업 업체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줄어들

든 모습이다. 금융분야 중심을 넘어서 특정 영역에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불균형 발전을 통한 산업간 연쇄효과를 증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신용정보 데이터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허가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그 역할이 데이터 오퍼레이터, 데이터 공급자,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세분되지 못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모습이다. 이는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의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고 변경하기 어렵게 하여 새로운 데이터 흐름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변화를 저해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의 생태계 육성은 개인이 중심이 되어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마이데이터 접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성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하여금 그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

#### 4.4.3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를 위한 합의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지 서비스 자체의 질 뿐 아니라 개인과 여타 생태계 주체 간에 신뢰가 절실하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은 필요한 정보제공을 가능케 하고 사업자들은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의식의 배양이 서로 간 균형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성원 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이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정부 홀로만이 아닌 민간 비영리조직 등으로 개방되어 활발한 참여가 요청된다.

## V.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 5.1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융합 가능성

국내에도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메인은 금융 분야가 가장 두드러지며, 건강보험, 의료, 조세, 교통, 광고 및 마케팅 등에서도 많은 서비스가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된 연구도 하나씩 발표되고 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의해 시범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는 연구도 있다 [1].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현재 나의 금융생활을 파악하고 재테크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은 계좌거래 내역, 대출 잔액, 금리, 이자 등의 금융자산현황을 분석하여 저축, 재테크 방안을 안내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또는 오픈뱅킹을 통해 다양한 은행의 계좌를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한 이체 등의 기능을 한 번에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다이렉트자동차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중대질병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의 필요한 상품을 실시간 비교해서 맞춤형으로 개인에게 추천해주는 서비스(예, 레몬클립)도 가능해졌다.

의료부에서는 다양한 건강정보를 분석 및 활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개인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예, 라이프레코드). 이렇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존에 개인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던 금융과 의료분야에서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되어 활용 중이다.

이렇게 마이데이터의 개별적인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데이터가 많고 정교할수록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개별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가 이미 확보된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입력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삶

〈표 1〉 실현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영역	관심사	핵심서비스 (예시)	
의	계절, 개인적 특징, 시대 트렌드에 맞는 패션	MyFashion	나의 패션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MyBody	나의 체형에 대한 커멘트
식	건강, 체력, 균형	MyFood	나의 음식 관리
		MyCondition	나의 체력, 컨디션 관리
주	부동산, 입지, 생활편의, 에너지 등	MyHouse	나의 집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부동산 시세, 세금, 아파트 공지, 주변 상점 이벤트, 지역 정보의 변화 및 안내, 관심지역 투자 정보)
		MyHome <sup>4)</sup>	나의 집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서비스 (전기, 수도 등의 에너지, 관리비, 보안 또는 안전, 소독 일, 가스검침일 등에 대한 관리 및 안내)
건강	평소 건강관리, 질환예측, 질병케어 및 치료	MyHealth <sup>5)</sup>	나의 건강 서비스 (질환 및 관리 등)
금융	재테크, 보험, 자산, 대출	MyMoney <sup>6)</sup>	나의 자금 관리 (급여, 주식, 펀드, 예금, 적금 등의 유동자산관리)
		MyWallet	나의 금융도구 관리 (각종 포인트 관리, 멤버십 관리, 카드 관리, 카드 혜택 관리)
		MyCredit	나의 신용도 관리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및 상환 관리)
교육	학습, 커리어, 진로, 역량개발	MyPortfolio	나의 이력관리 (진로 및 역량관리 및 홍보)
		MyMeeting	나의 회의 관리 및 지원
미디어	entertain	MyMedia	나의 미디어 정보 (내가 주로 시청한 동영상들에 대한 report를 통해 의존성들 파악)
		MyContent	나의 콘텐츠 소비 관리 (내가 하던 리니지 게임의 데이터가 게임아이템처럼전력분석 서비스의 참조데이터로 활용되면서 포인트, 코인, 현금 등으로 돌려받게 됨)
관계	집단, 사회적 관계	MySNS	나의 소셜 관리
		MyPerson	나의 인맥 관리
쇼핑	유통, 개념소비, 효율적 소비	MyShopping	나의 쇼핑
이동	시간 효율성, 최적 경로, 택시 호출, 대중교통 연계	MyVechcle	나의 교통수단
		MyTime	나의 이동 시간 관리
기타		복지 <sup>7)</sup>	피보호자의 안전, 생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서비스,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관리에 활용)
		환경	환경실천 문제, 시민성 문제와 관련된 서비스가 가능
		행정 <sup>8)</sup>	주소 등 변경된 개인정보의 간편 전송, 최신 고객 정보 유지
		안전	개인의 안전관리
		기부	개인의 기부 히스토리 관리

출처 : 마이데이터 생태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12) pp.151-152

전반에서 상당히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다음은 영역별로 마이데이터로 가능한 서비스의 예시이다.

이러한 개별 서비스는 분야나 영역을 아울러 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그 활용성이 높아지고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관련 데이터가 유통분야와 연동하는 동시에 나의 건강데이터에 연결될 수 있어야, 나의 건강상태에 적합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재료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금융생활과 건강한 식생활 등이 가능해지는 등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 5.2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BLTS의 관점에서 다양한 고민과 상세 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표 2는 유럽 상황과 비교하여 도출된 국내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 요약이다.

## VI. 결론

본 논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능해지는 개인의 삶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확대를 유도하고자 작성된

〈표 2〉 국내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

관점	주제별 유럽과 한국 비교	국내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
비즈니스 Business	유럽의 데이터열람권 대 한국의 데이터이동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유럽의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과 한국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모델 비교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와 데이터서비스의 역할 정립
	유럽의 빅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 및 스타트업체의 보호	국내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체 간의 생태계 구축
정책 및 제도 Legal	유럽 전체를 위한 GDPR 법안과 한국의 산업별 마이데이터 법안	산업의 범위를 넘는 포괄적 마이데이터 제도 마련
	산업별 제도에 따른 국내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제	창의적 융합서비스 창출을 위한 허가제 지양
기술 Technology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위한 유럽의 아키텍처	개인데이터저장소 프레임워크 확립
	Open API 표준 및 방향	데이터 유통의 글로벌 기술 표준 적용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의 시범서비스	분산 아이디 기술의 접목
생태계 및 사회 Social	기업의 마이데이터 시각과 개인의 마이데이터 시각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시각 촉진
	유럽의 데이터생태계 진화 방향	데이터 생태계 역할 세분화와 신규사업자에 대한 기회 확대
	유럽과 한국의 데이터거버넌스 체계 정립	정부, 민간, 비영리조직의 협업체를 통한 개방형 합의

- 4) 영국유사사례 - Stay Safe, Keep Warm, Save Money (맞춤형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 연료 빈곤층, 탄소 절감대상 관리 등에 활용) 등의 유관서비스가 있었음
- 5) 영국유사사례 - Mi Health서비스는 건강데이터 분석을 통한 식당 추천 및 원격으로 환자 상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였음
- 6) 영국유사사례 - Mi Finance (월별 수입 및 지출의 간편 관리,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부채 사전 방지)
- 7) 영국유사사례 - Relative Calm
- 8) 영국유사사례 - Expert Home



었다.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서비스에 아직 소극적인 기업 및 기관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가시화시켜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구체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업들은 토대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하며, 개인들은 마이데이터를 통한 혜택을 삶의 전반에 있어서 누려야 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마이데이터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는 다양한 장애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촉진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즉, 데이터의 연결과 활용에 대한 권리가 개인에게 보장되는 가운데, 개인데이터가 완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개인데이터의 공정한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데이터 독점이 방지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만이 마이데이터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남규, 최희석, 이혜진, 한상준, 이석형,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모델 설계”,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제22권, 제2호, pp.123-131, 2021.
- [2] 금융위원회,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2020.1.9.
- [3] 김용일, 김유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제27권, 제1호. pp.79-106, 2021.
- [4] 김혜영, 김유정, “국내 마이데이터 동향과 제언”, 한국경영정보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프로시딩, pp.464-466, 2021.
- [5] 마이데이터 글로벌, 마이데이터 백서 - 인간중심적인 개인데이터 관리 및 처리, 핀란드, 2015.
- [6] 마이데이터 글로벌, 마이데이터 백서 - 인간 중심적인 개인데이터 이용에 대한 소개, 핀란드, 2020.
- [7] 박주석,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의 비교 연구”.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3권, 제1호, pp.41-46. 2018.
- [8] 변승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인의무기록 마이데이터 활용모델 제안”, e-비즈니스연구. 제22권, 제5호. pp.3-14. 2021.
- [9] 이금노, “호주 소비자데이터권리 제정의 시사점 -마이데이터 정책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동향, 제105권, pp.1-21. 2020.
- [10] 이한영, “복유립모델 관점에 따른 마이데이터의 쟁점과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pp.33-64. 2020.
- [11] 최철, 초 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와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의 재산권적 측면에 관한 소고 -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197-224, 2021.
- [1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마이데이터 현황 및 수요조사, 2020.

저 자 소개



**박 주 석(Jooseok Park)**

- 1981년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 1983년 : KAIST 산업공학 (석사)
- 1990년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경영대학 MIS 전공 (박사)

- 현재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
- 관심분야 : 데이터경제, 아키텍처, 정보화전략



**김 혜 영(Hyeyoung Kim)**

- 2003년 : 숙명여자대학교 멀티 미디어·컴퓨터과학, 경영학 (학사)
- 2009년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 2009년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정보화 정책, IT전략 등



**김 한 성(Hansung Kim)**

- 1990년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2003년 : KAIST 금융대학원 금융공학 (석사)
- 현재 : 한국은행 전산정보국 자문역, 마이데이터코리아 이사
- 관심분야 : 디지털 전환, 탈중앙 금융, 기호학 등



**최 민 령(Minryung Choi)**

- 1996년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 (학사)
- 1989년: University of Washington, 로스쿨 LLM (법학석사)
- 현재 : 법무법인(유한)에스엔 파트너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관심분야 : 데이터·개인정보 관련법, 방송통신 관련법 등